

2026년도 골프 경기인 등록 안내 요약

1.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주요 개정사항 (시행일: 2025. 10. 1.)

대상	주요 개정 내용
선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고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추가 제한됩니다. (조치별 제한 기간: 서면사과 3개월 ~ 전학 12개월)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선수 대상 상해와 폭행의 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 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공통사항

항목	내용
등록 의무	경기인(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연중 수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유효기간	등록한 당해 연도 말일에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시행일: 2025. 5. 28.)
신청 방법	스포츠지원포털(g1.sport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저장)합니다. *PC와 모바일 웹 페이지 모두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필수 사항	신청서 작성 시, 온라인 도핑방지 교육 이수와 스포츠인권서약서 서약 동의가 필수입니다.

3. 경기인 유형별 주요 등록 절차

가. 전문체육선수

1) 등록 절차

절차	방법
1단계(본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저장), 등록비 20,000원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이적동의서 제출 대상자는 파일 업로드 *경로: 스포츠지원포털 → 로그인 → 경기인 등록 → 골프 → 선수 → 전문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합니다 → 신청서 작성
2단계(소속단체)	신청서에 소속단체장 직인 날인 (대학교: 총장 또는 학과장 직인 가능)
3단계(본인)	직인 날인 된 신청서를 등록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경로: 스포츠지원포털 → 로그인 → 경기인 등록 → 골프 → 선수 → 전문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합니다 → 신청정보 확인/수정 → 소속팀정보 → 선수등록신청서 업로드 → 파일첨부
4단계(승인)	시·도골프협회 등록 심사 및 1차 승인 → 대한골프협회 최종 승인

2) 등록구분

구분	내용	유의사항
12세이하부, 15세이하부, 18세이하부	나이 기준: “00세 이하”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진학생: 상급 학교 진학생은 최종학년도 졸업 이후 등록하며, 2026년 등록신청서 작성 시 소속팀을 변경해야 합니다. *연령과 학제가 다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등록하고,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의 부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등록과 활동상의 연령 차이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학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휴학생은 등록이 불가하며, 등록 후 휴학 시 전문선수 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일반부	대학원 재학생과 학생신분이 아닌 연나이 19세 이상의 사람	

3) 등록 불가 대상: 휴학생, 해외 유학생, 프로선수는 선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경기인등록규정 제12조(등록 결격사유 등)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4) 등록신청서 작성방법

절차	방법
기본정보	*체육인번호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암호화 작업입니다.(최초 1회) 신규등록자는 ‘본인 이력 찾기’ 선택 후 ‘이력 없음’을 선택해주세요. *도핑방지교육은 온라인 필수 교육입니다.(약 23분)
신상정보	*필수 입력: 사진, 학년, 이메일, 휴대폰, 보호자 휴대폰, 작성자 자택주소
소속팀	*소속팀 검색 > 시도 선택 후 학교명 검색(*약칭으로 검색되지 않습니다.) *소속팀은 학교이며, 학교 소속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 주소지 기준 협회로 선택 *학교명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먼저 ‘전문체육팀 신청’을 해주세요.(PC 신청만 가능)
학력정보	입력하지 않습니다.

나. 생활체육선수

1) 등록 절차

절차	방법
1단계(본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저장) *경로: 스포츠지원포털 → 로그인 → 경기인 등록 → 골프 → 선수 → 클럽·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합니다 → 신청서 작성
2단계(승인)	시·도골프협회 등록 심사 및 1차 승인 → 대한골프협회 최종 승인

2) 등록 불가 대상: 프로선수는 선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경기인등록규정 제12조(등록 결격사유 등)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3) 등록신청서 작성방법

절차	방법
기본정보	*체육인번호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암호화 작업입니다.(최초 1회) 신규등록자는 '본인 이력 찾기' 선택 후 '이력 없음'을 선택해주세요. *도핑방지교육은 약 23분의 온라인 필수 교육입니다.
신상정보	*필수 입력: 사진, 이메일, 휴대폰, 작성자 자택주소
소속팀	*소속팀 검색 > 시도 선택 후 소속팀 검색 *소속팀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먼저 '클럽신청'을 해주세요.(PC 신청만 가능)
학력정보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1) 등록 절차

절차	방법
1단계(본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저장) *경로: 스포츠지원포털 → 로그인 → 경기인 등록 → 골프 → 지도자 / 선수관리담당자 → 신청서 작성
2단계(소속단체)	신청서에 소속단체장 직인 날인 (대학교: 총장 직인)
3단계(본인)	직인 날인 된 신청서를 시·도골프협회에 제출 *파일 업로드 기능 없음 *선수관리담당자는 해당 자격증 추가 제출
4단계(승인)	시·도골프협회 등록 심사 및 1차 승인 → 대한골프협회 최종 승인

2) 등록 요건: 지도자는 소속단체의 감독 또는 코치로, 선수관리담당자는 자격증 소지자 및 선수를 관리하는 자로 임명된 사람이어야 하며, 소속단체에 1명 이상의 등록된 전문선수가 있어야 합니다.

3) 등록 불가 대상: 무소속(개인교습)의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경기인등록규정 제12조(등록 결격사유 등)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라. 심판

1) 등록 절차

절차	방법
1단계(본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저장)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소속단체인 시·도골프협회 또는 각급 연맹에 제출 *경로: 스포츠지원포털 → 로그인 → 경기인 등록 → 골프 → 심판 → 신청서 작성 *파일 업로드 기능 없음
2단계(소속단체)	소속단체인 시·도골프협회 또는 각급 연맹에서 신청서를 포함한 임명 확인 서류를 대한골프협회에 제출
3단계(승인)	대한골프협회 승인

2) 등록 요건: 대한골프협회, 시·도골프협회, 각급 연맹 소속의 심판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3) 등록 불가 대상: 무소속의 심판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경기인등록규정 제12조(등록 결격사유 등)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3. 소속변경(이적) 및 개명자 안내

가. 소속변경(이적)

구분	내용
소속변경 시기	2026년 등록 완료 후 소속변경(이적)하는 경우, 스포츠지원포털에서 소속변경(이적)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적동의서	<p>제출 필수 서류이며, 서식은 소속변경 신청 시 또는 대한골프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p> <p>*제출 면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세이하부 전문선수의 경우 - 동일 시도 안에서 진학·전학하는 중·고등학교 소속의 전문선수의 경우 - 동일 시도 내 중·고등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없어서 타 시·도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 소속 학교가 운동경기부를 해체하고 해당 시도 내 동일 종목의 운동경기부 정원이 부족하여 타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교운동경기부 소속의 전문선수일 경우 - 클럽소속의 전문선수가 동일 시도 안에서 클럽 간에 변경의 경우 - 15세이하부 또는 18세이하부 전문선수의 보호자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여 전 가족이 전·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18세이하부 전문선수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 군 입대 및 제대로 인하여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 소속단체가 해체된 경우 - 부상,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사람 - 전문선수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등록일(등록신청일을 등록일로한다)부터 만 2년이 지난 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
대회 참가 제한	<p>타 시·도로 이적한 선수는 대회 개시일 기준 해당 학교 재적기간(또는 등록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p> <p>* 타 시·도라 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간의 이적을 의미합니다(예: 경기도 ↔ 서울특별시).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이동(예: 경기도 내 수원시 ↔ 성남시)은 이 규정의 '타 시·도 이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 예외: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 해외 유학 후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3월말 기준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년체전/전국체전은 별도 규정 적용)</p>

나. 개명자 (등록 이력이 있는 자만 해당)

구분	내용
개명자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명 확인 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대한골프협회에 제출 2. 협회 변경 처리 완료 안내를 받은 후, 스포츠지원포털 회원 탈퇴 후 재가입 (등록 이력은 연계됨) 3. 재가입 후 당해 연도 경기인 등록을 신청